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Tel. 02-393-9085 Fax. 02-363-9085 E-mail. corights@jinbo.net

문서번호 : 04-0523-1

발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 인사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2004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또 다시 양심의 자유의 문제,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5. 연대회의는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거부권의 문제와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또 다시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서로간의 오해와 반목으로 출구 없는 터널과도 같은 동어반복적 싸움이 아니라 그 이전의 논의들을 넘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6.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실질적 논의의 확산을 위한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논평 /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아웃사이드어 편집위원)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전향적 판결을 요구한다 /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체복무제 법안의 주요 골자 소개 / 이재승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연대회의 이후 계획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참가 각계인사 성명 발표

질의 응답

- 사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일시 및 장소

2004년 5월 24일 (월) 오전 10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④ 문의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016-221-7451)

최정민 (연대회의, 017-311-4245)

붙임 :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체복무제도와 국제동향, 연대회의 이후 활동계획,
각 시민단체 지지성명, 연대회의 성명, 연대회의 활동 일지. 각 당 질의서 총 38매 <끝>

양심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1.4.1. 89헌마160)”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998.7.16. 96헌바35)”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인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인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은 이와 같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 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처벌규정은 위 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 여러 조약들
-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결의안들

관련 권리들의 개요와 출처

권리	세계인권선언	조약법(Treaty law)	인권위원회 결의안
병역거부권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988/77호, 1995/83호 1993/84호, 1991/65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6조, 제18조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11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 인종차별철폐규약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a) (i)	
동등한 진급 및 승진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c)	
사회보장권	제2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의식주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5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교육받을 권리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공무담임권	제2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	
생명권	제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998/77호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범들

○ 조약 : 병역거부권은 본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1948)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예배·의식·행사·선교를 통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와 같은 표명은 종교, 도덕, 윤리, 정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사상과 양심 혹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제한조항에 근거해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병역거부가 전쟁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역거부의 집단화가 공공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군복무가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도의적인 의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1993년에 인권이사회가 승인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약 18조의 내용으로부터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양심의 자유 혹은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심각하게 상충되기 때문이다.

UN doc HRI/ GEN/1/Rev.1 at 35 (1994)

○ 결의안 :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채택됩니다. 그 중에서도 1998년 통과된 결의안은 가장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병역거부권에 관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촉구한다.

이 결의로부터 병역거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복무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결의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 속에서 표결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 관행 : 유엔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는 '사상,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히 병역거부와 관련된 의제를 고찰해야 하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문에 병역거부 문제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77호 결의안

인권위원회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과거 인권위원회의 결의들, 특히, 누구나 병역거부권을 가지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그리고 인권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1995년 83호 결의(1995년 3월 8일)의 내용을 상기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서(E/CN.4/1997/99)를 검토한 결과,

병역거부권이, 종교, 도덕, 윤리, 인도주의 혹은 비슷한 동기로부터 발생하는 깊은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라는 점을 인정하며,

병역 수행 중에 있는 사람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4조를 상기하며,

1.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촉구한다.
2. 몇몇 국가들이 별다른 의문 없이 타당하게 병역거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3.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없는 국가들은 각각 신념의 특징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않도록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4. 강제적 병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별다른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않은 각국은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비무장복무 혹은 민간적이며 징벌적이지 않는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5. 각국은 병역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미 각 국의 법이나 군사절차에 따라 유죄확정을 받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병역거부자들이 다시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6. 국가는 복무기간이나 복무조건 혹은 어떤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자국 법과 관

행에 따라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7. 각국은 개인 사례의 처해진 상황이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명시된 난민의 정의에 관한 조건들과 교차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하며, 병역거부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두려움 때문에 자국을 떠난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명을 허락하도록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8. 병역의 의무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역거부권 및 병역거부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입수가능성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9.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게 전달하고 병역거부권이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포함하여 유엔의 공식적인 정보제공 활동들에 포함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한다.

10. 또한 사무총장에게 이 분야의 최근 진전상황에 관해 정부, 유엔 전문 기관, 정부간 혹은 비정부기구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것과 현재 자료에 한해 분석하여 인권위원회 56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의제”라는 주제에 관해 차기 56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표결 없이 채택]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 11(g)

시민적·정치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공동제안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영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본 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의 사항들, 특히,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엔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1998/77호 결의(1998.4.22.)의 내용을 상기하며,

*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의 절차규칙 69의 3항에 의거

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모범사례를 편찬, 분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E/CN.4/2004/55)에 주목한다.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3.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본 인권위원회의 1998/77호 결의에 비추어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후 평화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한다.
5. 모든 적절한 출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범사례에 관한 보충적 정보를 담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요청한다.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에 부쳐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박탈해온 한국 정부에 대해 이번 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국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올해 유엔 결의안은 공동제안국이 지난 2002년의 14개국보다 20개국이 늘어난 34개국에 달했으며, 이라크 침공으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는 미국까지도 유엔인권위에서 발언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평화시 뿐만 아니라 전쟁시의 병역거부권이 결의안에 언급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임이 다시 한 번 천명된 셈이다. 이로써 소위 ‘국가안보’ 혹은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미명으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 해왔던 정부와 국방부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번 결의안 내용 중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권고한 조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연대회의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새 정부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 수감자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제외해 왔다. 이번 결의안에도 나타나듯이 병역거부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제 현실적 고려의 문제가 아닌 당장 시행해야 할 ‘원칙’이 된 것이다.

비록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년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지금, 현재의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먼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이번 결의안의 채택에도 참여한 한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말로만 인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관련 국내 법률과 관행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과 결의안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500여 병역거부 수감자들과 병역거부 전과자에 대한 사면·복권부터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번에 새로 출범한 17대 국회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루기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 4. 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테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체복무법〉안의 주요골자

우리는 대체복무제도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외래풍조로 간주하는 시각의 교정을 바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1만 여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똑같은 이유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 현재에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살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을 떴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거부자의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는 유엔인권위원회 77호 결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각국의 입법례와 종전의 장영달 의원안, 천정배 의원안, 여타 제안을 참고하여 <병역법 개정>제안과 <대체복무법(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제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대체복무를 병역(보충역)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병역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하여 대체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크게는 대체복무영역, 복무기간, 동원기간을 병역법에 신설하였습니다.

대체복무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와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연대회의는 그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고,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두 가지 법안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부치고자 합니다.

1.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널리 윤리적 결정에 입각하여 병역을 거부하려는 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2. 병역을 거부하려는 자는 일정한 문서(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대체복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판정절차에 따라 양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3. 대체복무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정책수립, 판정)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한다. 대체복무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로 상정하였으며, 준사법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업무분야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로 한다.
4. 병역거부자의 인정이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 병역거부자는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다.
5. 판정절차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군사훈련소 대신에 대체복무훈련소로 소집되어 그곳에서 대체복무(사회봉사)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훈련을 받는다.
6. 대체복무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병원근무, 중환자보조, 장애인보조, 이동사회봉사,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에서 복무한다.
7.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역사병에 준하는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활동에 동원되고, 1.5배 기간의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체복무활동에 동원하지 않는다. 예비군의 전시동원에 상응하게 대체복무자는 대체복무영역에 동원된다.
8. 대체복무자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중 및 제대 후에도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9.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시급하지만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석방조치와 함께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10.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기록에 대한 말소조치 나아가 광범위한 사면복권조치를 취해 정

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원한다.

연대회의는 평등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동향과 대체복무제도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며 싸웠고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류의 역사는 조금씩 발전되어왔다. 독재정권 시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처벌 받아왔던 많은 행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당시에는 소위 ‘빨갱이’들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명예가 복원되어 과거의 언행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양심수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이전 빨갱이나 폭도들의 근거지들도 많은 곳이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 이렇듯 인권의 개념은 죽거나 물신화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개념으로서 그 범위와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화, 확장되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중인 개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도 이러한 인권개념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하나의 권리를 발굴하고 알려나가는 과정이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16세기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부터라고 한다. 주로 침략국의 시민들이 자신이 참전해야 하는 전쟁을 비인도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참전을 거부함으로써 반전운동의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당시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매도되며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기도 했던 이들의 신념은 현재 역사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평화에의 의지와 신념이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는 와중에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권활동가들은 평화에의 신념이 개념조차 모호한 국가적 이익을 이유로 철창에 갇힌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 법과 인권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체복무 등의 사회적 제도가 각 국가별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00년대 중반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서 인정함과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홀로 독일과 세계대전을 치르는 1916년에 대체복무법을 도입하였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행하였다. 독일은 냉전구도가 강화되고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던 1961년에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시기나 각 국가별 특성으로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나 대체적으로는 비군사분야인 사회봉사 분야에서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여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편이며 국제적으로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1.5배 이상 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기준이다.

2001년 5월 31일 있었던 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조국 교수는 1997년의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군제도별로

- 징병제가 없는 국가 :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국
-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 :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

또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민간봉사제도의 보장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보장하는 국가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데, 사이프러스 등 25개국

-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 :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과 하위 법률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 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갇혀있는 근무 등이며,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1.4배 정도이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¹⁾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그 종교의 교세가 커진다고도 하고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하고 군대보다 힘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반드시 그 제도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고 한다. 물론 누구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순 없지만 또 그러한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 위에서 밝혔듯이 대체복무제도는 지금 방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십 년간의 실험을 거친 검증된 제도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누구나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상상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상상을 극대화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잘 연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국가적 책임이라 굳게 믿는다.

대체복무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상 가능한 효과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복지의 확대이다.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데 대체복무자들의 역할이 굉장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연대회의가 2001년 대만 노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노인의 집 원장은 민간봉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인원이 한꺼번에 배치되는 바람에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다. 대만의 민간봉사제도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그 바운더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 민간봉사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들을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정도면 민주주의 국가체계 하에서 거의 최대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독일 활동가 페터 토비아슨에 따르면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저한 사회복지 수준의 확대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일단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복무자도 적고 규정도 까다롭겠지만 도입 기간이 오랜 나라들의 역사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중

1)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p.64.

내는 징병제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라는 것이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역종의 선택처럼 기능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군대내 인권수준도 많이 향상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적인 2가지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효과이다. 예비군의 의무조차 없으나 대체복무가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단지 1개월밖에 길지 않은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독일의 경우 아직도 현역병 입영자가 전체 입영대상자의 60% 정도로 대체복무자들보다 많다. 그것은 독일의 군대가 매우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군에 입대할 경우 직업교육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도의 논의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을 길게 하고 역종을 어렵고 힘든 분야로 한정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인원이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데 오히려 차츰 한국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OECD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복무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셋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는 이들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인권의식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로 안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보다 발전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국가의 안보가 과연 힘 혹은 무장력의 우위로서만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신장을 통한 국가안보는 결국엔 엄청난 무기경쟁을 낳을 수밖에 없고 동반자적인 공동체 의식보다는 국가간의 적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관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월드컵 4강에 빛나는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졌다. 월드컵 4강에 진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빛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에 이바지했다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듯 현대의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이 포괄적으로 사고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도 이러한 안보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분단과 국가안보의 논리로 50년 이상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야만 했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그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열악한 한국 군대현실에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은 그 과정도 그 내용도 결코 쉬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남북관계나 사회적 민주주의식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남에 대한 배제와 차별보다는 가능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이후 일정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36개 시민, 사회단체와 이 운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4일 출범하였다. 출범 이전부터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병역 거부의 문제가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권리라는 것을 알려나갔으며 병역거부자들의 법정 지원, 국·내외 연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 등 많은 사업들을 벌여나갔다. 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와 분석, 사례 수집, 사회적 여론화를 기획,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17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개원을 하게 됨에 따라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청원 운동을 올해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로 이 계획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입법청원 운동의 출발은 이번 주 대만방문으로 시작한다.

- 5월 26일~28일 :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 타이완은 2000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이자 병역국가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번 방문은 2001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서, 대만 대체복무 시행이후 4년의 성과와 한계를 배우고 이를 17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화될 대체복무제도 입법청원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국방부 관계자 면담 : 입법부 국방위원회 의장, 국방부 인력관리 책임자
- 역정사(병무청) 방문 : 역정사 부청장 면담, 대체복무 관련 자료 검토, 대체복무 기본훈련 졸업식 참석
- 대체복무 관련기관 시찰 : 대체복무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관련기관 시찰, 실제 대체복무중인 병역거부자와의 면담
- 시민단체 만남 : Peacetime Foundation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6월 초에는 방문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마련된 대체복무제도 관련 법안의 손질 작업도 들어가게 된다.

- 6월 초

- 연대회의 입법안 최종 검토 및 수정

마련된 입법안을 바탕으로 각 당 국회의원들과 유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고

- 6월 중순~말 :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

- 입법 추진의사가 있는 각 당 국회의원들과 유관 시민단체들과 함께

6월 17대 국회 개원한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홍보 및 의원발의를 위한 로비작업과

함께 대시민 선전전 및 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17대 국회 개원 이후
 - 국회 관련 작업과 사회 여론화 작업
 - 국회로비단 구성 : 의원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 입법청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 및 서명전
 - 국회 앞 1인 시위
 -

각계 단체 성명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선고'에 대한 성명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병역거부행위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의 자유문제,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자유권의 충돌문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제시된 여러 기준들이 병역거부자의 인권 개선은 물론, 안보상황을 이유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한되어왔던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선 재판부가 양심의 자유에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을 실현할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외부적 간섭 없이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해,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 같은 윤리적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이 같은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 법제로 인해 여전히 양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질식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그동안 안보상황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천부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와 실정법이 어긋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희생시켜왔던 법적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분명 진전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안보상황과 실정법을 이유로 여러 기본권들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이 판결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병역거부 수감자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들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재판부가 상기한 것처럼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자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병역거부권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엔의 관련 결의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한국정부와 17대 국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우리 사회의 인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국가안보 논리에 희생되어왔던 여러 인권의 가치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각 정당은 여러 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5. 24

국제민주연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장애여성공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팻',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만화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신 : 불교인권위원회

제목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하여 불교인권위원회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국방의 의무란 국민과 민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방의 의무란 말을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국가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간 이들은 군에서 얼마나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았던가. 날마다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면서 때로는 절망하며 배고파 신음하며 상관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봉사하였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기피를 한자들이거나 군에 가지 않으려고 남의 제대증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다닌 이들이 출세를 한 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국가를 책임을 질 정치인들의 아들은 과연 몇이나 군에 의무를 다하였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국가에서는 무엇을 보상 했던가. 국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청춘의 보상을 해야 한다. 청춘 시절에 군에서 3년 동안에 온갖 인권 탄압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 몸이 떨린다.

말로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국민 모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성찰해 보라. 대부분 정당인들이나 사법 국정에 임하는 자리에 있는 아들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일찍 알았다면 불교인들도 군에서 총을 들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로 그러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있는 지도 모르는 우매한 시대에 살았다. 오로지 국방에 소임을 다하는 것만이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만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무엇 때문에 종교적인 양심으로 총을 들지 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강한 마음을 알았다. 재판부는 헌법에 제정 된 이래 가장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에 대하여 헌법 정신을 수행한 판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강한 판사다.

오늘날에 있어서 군에 간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양키의 용병이 아니라고 말하자 양키의 용병이라면 군에 갈 이유가 없다. 또한 군에 간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에서 무엇을 보상 했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육신에 병들었어도 국가에서는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는 오히려 국방의 의무란 말을 욕되게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역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보상이 주어진 이들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군에 가지 않고 있던 자들이 국가의 소임을 다한 이들 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것을 보았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이 본사 주지를 하고 있으며 종단에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보았다. 어디 불교뿐이겠나.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이 도처에서 출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에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군에 가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우리는 보았다. 군대에 가서 광주 민중들을 향해서 총 뿌리를 겨누는 이들이 과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광주 민중들을 학살한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가. 그러한 국방의 의무라면 차라리 거부하는 편이 더 현명한 군인이다. 자기 국민에게 총을 들지 않겠다는 군인에게 박수를 보낸다. 군인이 자기의 민중들에게 총을 쏜 일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하여 역사에 죄인이라고 말하자 광주 민중들을 학살한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 국방의 의무는 무의미하다 그리하여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모병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대학생들과 같은 자격을 주어야 한다. 학교를 만들어 학사 석사 박사를 주는 군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군인, 그것만이 참다운 인간의 정신이며 인간의 존중을 성찰하는 군인이다.

젊은 사람들을 군에 보내어 양키의 용병이 된 것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양키의 용병이 아니다. 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양키의 명령에 베트남에 간 군인과 군에서 부상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훈련 도중에 죽은 군인들,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군인들, 미국 대사관을 지킨 군인들, 양키 부대를 지킨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양키의 용병이다. 이제 양키의 용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국가에서는 보상을 다해야 한다. 양심적인 병역 거부 자 무죄 판결을 불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2004년 5월 2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지원, 한상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가 5월 2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씨(22세)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세)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 를 결단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직시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주의자로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재판부도 밝힌 것처럼, 1990년에 국제인권규약 B에 가입한 국가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아야"(18조 2항)하며, 정부 당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참고하여 하루 속히 대체복무제 실시를 통해 이 땅의 평화를 갈망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한다.

2004년 5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 장 식

사회당

[논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서울 남부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 판결'에 부쳐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양심의 자유는 사법기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그간의 판례를 뒤집고 병역거부권을 양심의 자유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회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무조건적 안보논리, 국민개병제 원칙 등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판사의 판결대로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다. 더 이상 이 땅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체복무제와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2004년 5월 22일

사회당

새사회연대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적 보호대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새사회연대는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처음 인정한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명기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만을 강요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론화 된 것은 얼마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에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인용하여 신념을 가질 자유를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가치로 인정한 것은 우리 사회에 성숙된 인권의식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약 5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종교와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병무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향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4년 5월 21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정병무, 오준형, 황선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번 초유의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비록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난 50여 년 동안 고통 받아 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 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즉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를 존중받지 못해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심 자유에 포함된다는 선언이자, 병역의 형평성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이 더욱 확대되어서 현재 재판 중인 300여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속 수감 중인 47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적인 무죄가 현실에 있어 실질적인 무죄로 이어질 수 없는 현실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하여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금번 17대 국회와 정부가 먼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 최다 병역거부 수감자 양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 첩경일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올해 3월에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는 다시 한 번 병역거부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각국 정부는 각 나라 사정에 맞는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의의 한 주체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동의한 결의안과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병역기피 확산, 국가안보위기 등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논리를 내세워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구시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와 각 정당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비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금번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여론 조성과 무수한 병역거부 전과자 양산을 중단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확히 당론으로 정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간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입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2004. 5. 24.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일지

2000년	3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몇몇 사회단체들이 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토론회 준비
2001년	1월 초	한겨레21에서의 기사화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됨
	3월 17~8일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진행. 비공개 활동가 워크샵. 며칠 후 징병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감. 운영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음.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고 이후 보다 대중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5월 31일 공개워크샵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5월 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여호와증인들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여 법률지원 시작.
	5월 15일	변호인단이 변론을 맡은 첫 군사재판. 지금까지의 군사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3년형이 종전대로 선고되었고 이후 모든 군사재판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3년형이 구형됨.
	5월 31일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진행. 100여명 참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89년 양심선언자가 참석하여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증언을 하였음.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이단에 대한 특혜입법이라는 내용의 반대성명발표. 민주당 천정배, 장영달 의원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6월로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청회가 7월로 연기되고 이후 결국 무산됨.
	7월 8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 참관단(이석태 변호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 이애련 회장, 최영금 선생, 인터넷신문 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운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윤 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이 대만 방문.

	8월 2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에 관한 보고회 개최.
	9월 27~30일	김수정, 오재창 변호사, 최정민 활동가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연례 세미나 참석. 한국의 상황을 최초로 국제무대에서 발언.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최초로 가족 중 같은 죄목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 징역 2년 6월 선고.
	10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개최
	10월 23일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불가 입장 밝힘.
	10월 24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방문.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림.
	11월 17일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개최
	11월 2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접수. 구금시설내 종교집회 허용과 가석방 기준 완화요청
	1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에서 '소수자의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개최.
	12월 17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 병역거부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진정서 제출
	12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2002년	1월 11일	퀘이커 평화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동아시아 담당관 한국 방문.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림.
	1월 25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황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제네바 사무국에 제출.(민변)
	1월 29일	서울 남부지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경수(21, 대학생)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 심리를 정지하고 현재에 당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
	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발표

2월 7일	오태양씨 1차 영장 실질심사, 출두에 앞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연대회의 기자회견 가짐. 불구속 결정
2월 16일	검사의 재차 사전영장 발부로 2차 영장 실질심사. 구속수사 사유가 1차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재 기각.
2월 18일	KNCC 인권위원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개최
2월 22~25일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토론회 진행
3월 4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인드라마생명공동체·좋은벗들 ‘불교의 평화사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3월 25일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3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제58차 UN인권위원회 민간단체 참가단 기자회견
4월 2일 ~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4월 25일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 비공개 토론회 / 민변
5월 7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작은책 발간
5월 8일	대체복무입법청원 1차 수요캠페인 및 서명운동 학생단체 기자회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
5월 12일	불교연대 주최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연등축제 캠페인
5월 15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2차 수요캠페인
5월 22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3차 수요캠페인
5월 24일	전학협 주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문화제 ‘충을 버려’
5월 29일	대체복무입법청원을 위한 제 4차 수요캠페인 및 문화제
5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군대반대 사이트 이용정지 결정
6월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6월 17일	불교연대 주최로 박노자 교수 초청 강연회 - 호국불교와 폭력의 문화를 넘어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를 묻는다
6월 19일	오태양씨 첫 재판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짐

6월 26일	법무부에 ‘병역거부자 가석방 시행의 차별행위 개선에 관한 탄원서’ 제출
7월 4일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 공청회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7월 9일	유호근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진정서 제출
7월 19~20일	연대회의 상반기 평가 MT
7월 30일	임치윤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 부산 병무청 앞
9월 10일	임치윤씨,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진정서 제출
9월 12일	나동혁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 서울 병무청 앞,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서강대 등 대학생 14명이 예비병역거부 선언을 함.
9월 1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국회 기습점거 시위
9월 16일	나동혁씨,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진정서 제출
9월 17일	임치윤씨 병역거부를 계기로 부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9월 26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병역거부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반대자들이 이대 총학생회 사이트에 몰려 사이트가 다운됨. 온라인 상 성폭력 문제 제기.
10월 10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이버 테러 및 성폭력에 관한 토론회 개최
10월 12일	경희대와 성균관대 대학생 5명 예비병역거부 선언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거리서명에서 받은 5만 명의 서명용지 국회 전달 전국대학생 평화행동의 날 행사 / 종묘공원 "우리가 만드는 평화 - Why Not" 문화제 / 서울대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관에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권고
11월 5일	전쟁반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지 2003년 학생회선거 후보자 기자회견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11월 9일	연대회의 하반기 평가 MT
11월 21	“대학가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성공회대학교
12월 9일	민변 “한국인권 보고대회”에서 병역거부 관련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2월 17일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국제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2월 22일	KBS 100인 토론에서 최초로 병역거부 문제 다룸
2003년	1월 15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종교집회 자유 허용 권고 수용불가 통보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종교집회 자유 허용권고 수용불가에 유감 표명
	2월 5일	최준호씨 병역거부
	2월 7~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학교 개최 / 숭실대학교
	3월 7일	“교육부와 국방부는 구시대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발표 / 3월 5일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교육부의 공문 내용에 관한 규탄 성명.
	3월 11~1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 국제회의 개최 / 성공회대학교,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3월 27일	집총거부 항명죄로 1년 6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청와대 정무, 민정수석실, 각 정당 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등에 발송, 4월 16일 공문을 통해 이들 국가기관에 재차 호소.
	4월 10일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병역거부 양심수 사면복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4월 25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충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협력사업으로 선정
	4월 30일	노무현 정부, 1,4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복권 단행. 병역거부자는 제외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관
	5월 6일	연대회의 최정민, 병역거부자 은국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기자회견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없는세상’ 후원의 밤 행사 및 발족식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6월 15일	KBS 100인 토론에서 두 번째로 병역거부 관련 내용 다룸.
	6월 30일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서 종교집회의 자유 허용
	7월 1일	임성환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7월 21~30일 예비병역거부자 현우, 일본 자유학교 초청으로 일본 도시들 순회간담회
- 7월 22일 임태훈씨 병역거부 선언
- 7월 31일 민가협,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목요집회 / 탑골공원
- 8월 17~21일 2003 평화캠프 / 전쟁없는세상, 평화인권연대 주최, 연대회의 후원
- 9월 25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시사회 / 동숭동 하이퍼텍 나다
- 10월 9일 최준호씨, 홍성교도소에서 주사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 10월 23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지리산 실상사
- 10월 29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광주인권영화제
- 11월 1일 제1회 비판정치학대회, 이남석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치철학적 정당화를 위한 한 시론” 논문 발표 / 서강대학교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수원인권영화제
- 11월 7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중앙대학교 사범대
- 11월 8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전주인권영화제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11월 13일 엄창근씨 병역거부 선언 축하의 식탁 및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11월 18일 홍성교도소, 민가협에 보낸 최준호씨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통해 유감 표명.
- 11월 20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11월 21일 현역 이등병 강철민씨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기자회견 / 기독교회관
이후 기독교회관 708호에서 일주일간 농성 돌입
- 11월 22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이화여대

	11월 28일	강철민씨, 수십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던 중 연행 이후 농성자들과 지지자들은 후원회를 조직해 항소심 공판 때까지 캠페인 등 활동을 펼침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 문화제 “부러진 총 이야기” /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12월 9일, 11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
	12월 10일	방송위원회, 강철민씨 병역거부와 농성과정을 다룬 MBC 다큐멘터리 회 노애락을 현역군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군무 이탈 등 위법행위를 고무한 것이란 이유로 제재조치를 전제하고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
	12월 26일	지난 12일 첫 번째 공판에 이어 강철민씨 1심 선고공판 열림. 징역 2년 형 받음.
2004년	1월 26일	영민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 전쟁없는세상
	2월 7~8일	병역거부자들과 연대회의 MT
	3월 23일	강철민씨 항소심 선고공판, 1년 6개월 형 받음.
	3월 30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연대회의 참가단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3월 31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병역거부 관련 한국 참가단 출국 (참가단 : 평화 인권연대 정용욱 상임활동가, 민변 김기연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4월 2일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상영회 / 고려대학교
	4월 29일	임태훈씨 1심 선고공판, 1년 6개월 형, 보석신청 기각 민가협,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목요집회 / 탑골공원
	5월 15일	최진 씨 병역거부 선언 / 대구교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 대학로 ‘전쟁없는세상’ 1주년 후원의 밤 / 중앙대학교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3 명(정병무, 오준형, 황선호) 무죄 선고
	5월 24일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를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공 개 질 의 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 빌딩 5층
E-mail. peace@jinbo.net | Tel. (02) 393-9085 | Fax. (02) 363-9085

문서번호 040524-

수 신

발 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제 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입법화 촉구를 위한 공개 질의서

참 조 인권위, 법사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담당자

날 짜 2004. 5. 24

1.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이들의 병역거부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또한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소위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 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판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구비하고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3. 이번 판결은 지난 50여 년 동안 고통 받아 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 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서는 병역기피 확산,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등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논리를 내세워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공동체적 가치에 있어 여전히 냉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정부 당국의 입장에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실시될 경우, 병역거부자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혹은 생각보다 잘 적용되어 나갈지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본다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하고 계획을 입안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대체복무 실시 자체’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한해 700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 수감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고민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대체복무제 역시 사회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시스템일 뿐입니다.

3. 더불어, ‘특수한 안보환경’을 강조하는 것 역시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력에 의한 안보의 문제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군사전문가들에게서조차 군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실질적 근거도 없이 ‘특수한 안보환경’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군사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보가 단지 ‘군사력’에 의존한 개념일 수만은 없으며, 사회통합력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때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정책입니다.

독일과 대만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나라 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에 군사적 긴장관계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인식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들려온 바가 없습니다.

4. 대체복무제가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특정 집단의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본질이 뒤바뀌는 논의입니다. 또한 병역거부권 인정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비단 병역거부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군 복무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국 정부는 1998년, 2000년, 2002년, 그리고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자들을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등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올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논의의 한 주체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제규약의 의거하여 동의한 결의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국방부, 병무청 등이 이에 역행하는 입장을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는 현재 그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아직 까지 그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정도 중요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임이 분명하게 확인 된 지금, 국회와 정부가 먼저 제도 개선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자 수감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첩경일 것입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금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과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입법화에 대한 귀당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 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